# 1 이식 가능한 장기등의 범위 확대 연혁

| | 장기이식법 제3조(장기등의 정의) |
|---|---|
| 최초 제정<br>'00.2.9.<br>(총7종) | ○ 법률로 정하는 것(7종)<br>- 신장, 간장, 췌장, 심장, 폐, 골수, 각막 |
| '07.9.28.<br>(총9종) | ○ 법률로 정하는 것(7종)<br>- 신장, 간장, 췌장, 심장, 폐, 골수, 각막<br>○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(2종)<br>- 췌도,소장 |
| '12..12.4.<br>(총13종) | ○ 법률로 정하는 것(7종)<br>- 신장, 간장, 췌장, 심장, 폐, 골수, 각막<br>○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(6종)<br>- 췌도, 소장, 위장, 십이지장, 대장, 비장 |
| '18.8.9<br>(총16종) | ○ 법률로 정하는 것(7종)<br>- 신장, 간장, 췌장, 심장, 폐, 골수, 각막<br>○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(9종)<br>- 췌도, 소장, 위장, 십이지장, 대장, 비장, 손 및 팔, 말초혈 |
| '18.12.11<br>(총16종) | ○ 법률로 정하는 것(7종)<br>- 신장, 간장, 췌장, 심장, 폐, 골수, 안구<br>○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(9종)<br>- 췌도, 소장, 위장, 십이지장, 대장, 비장, 손 및 팔, 말초혈 |
| '19.1.15<br>(총18종) | ○ 법률로 정하는 것(11종)<br>- 신장, 간장, 췌장, 심장, 폐, 골수, 안구, 손·팔, 발·다리<br>○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(7종)<br>- 췌도, 소장, 위장, 십이지장, 대장, 비장, 말초혈 |

## 2 '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' 개정 사항

### □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2조(장기등의 정의)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호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제3호는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. | 제2조(장기등의 정의) ---------- ----- 제4조제1호마목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.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4. 뼈·피부·근육·신경·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 및 팔 | <삭 제> |
| 5. (생 략) | 5. (현행과 같음) |
| 제14조(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)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"이란 폐, 췌장, 췌도, 소장 및 말초혈을 말한다. | 제14조(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췌장, ----------. |
| 제27조(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)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 | 제27조(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) ---- ---------- |

| | |
|---|---|
| 하는 부득이한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| ----------. |
| 1. ~ 4. (생 략)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|
| 5.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의 피부색, 장기등의 크기, 성별, 삶의 질 개선정도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(손 또는 팔을 이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 | 5. ----------(손.팔 또는 발.다리를 ---------- ----------) |
| 제29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| 제29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----------.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| ② ---------- |

| | |
|---|---|
|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br>1. ~ 5. (생 략)<br>6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제비·진료비 및 위로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<br>③ (생 략)<br>④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의무기록 열람, 검사와 처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br><신 설> | ----------.<br>1. ~ 5. (현행과 같음)<br>6. ---------- 장제비·진료비 ----------<br>③ (현행과 같음)<br>④ ---------- 업무와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----------.<br>제29조의4(권한의 위임) 법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.적출.이식 통계를 작성.관리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. |